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호

건설신기술 지정

‘연결부 및 받침 구조를 개선한 터널 강지보재 제작 및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주)터널테크		
	주 소	우2630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길71-8		
	전화번호	033-763-5865	팩스번호	050-4290-9368
신청인(2)	법인명(성명)	(주)유신		
	주 소	우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역삼동)		
	전화번호	02-6202-0114	팩스번호	02-6202-0699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983호
- 명 칭 : 연결부 및 받침 구조를 개선한 터널 강지보재 제작 및 설치공법
- 기술분야 : 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상반·하반 분할 굴착하는 터널을 대상으로 상부 강지보재에 높이조절 장볼트를 사용하고 해당 볼트로 받침부를 형성하여 지보력을 확보하고, 볼트연결을 위한 연결부 상부의 슛크리트 파쇄가 불필요 하며, 안정적인 지보력 형성이 가능한 터널강지보재 제작 및 시공 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터널 굴착이 상반·하반 분할 굴착하는 터널을 대상으로 격자지보의 상부 받침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볼트를 사용하고, 하부 격자지보재 연결관은 일방향 개방하여 높이조정 받침볼트에 수평 체결 조립이 가능하도록한 격자지보재 제작 및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없음

5.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